<table>
<tr><th>위치</th><th>오류유형</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12p
Point 17</td><td>문제-본문</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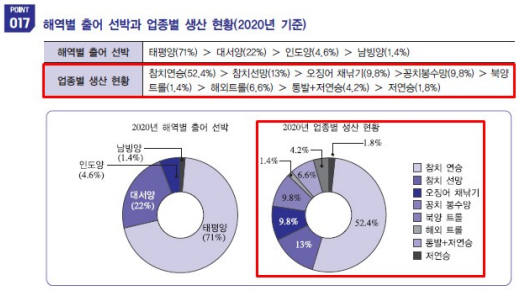

</td><td>
<table>
<tr><td>업종별
생산 현황</td><td>참치선망(60.97%) > 해외트롤(16.98%) > 참치연승(8.50%) > 북양트롤(6.23%) > 오징어채낚기(3.96%) > 저연승(1.95%) > 원양봉수망(1.37%) > 원양통발(0.04%)</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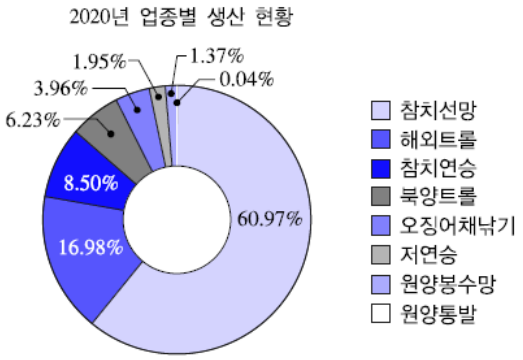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2">20~20p
15~25줄</td><td rowspan="2">문제-본문</td><td>수정 전</td><td>
<table>
<tr><td rowspan="4">부유
생물</td><td>극미세
부유 생물</td><td>• 5μm 이하
• 일반적인 채집망에 의한 채집은 불가능
• 거름종이 이용법, 가라앉힘법, 원심분리법 등을 이용하여 채집</td></tr>
<tr><td>미세
부유 생물</td><td>• 0.005~0.5mm 정도의 크기
• 대부분 식물 부유 생물</td></tr>
<tr><td>미소
부유 생물</td><td>• 0.5~1mm 정도의 크기
• 대부분 동물 부유 생물
예 해양 무척추동물 및 어류들의 알 · 치어 · 유생</td></tr>
<tr><td>대형
부유 생물</td><td>• 1~10mm 정도의 크기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동물 부유 생물과 소수의 대형 식물 부유 생물</td></tr>
</table>
</td></tr>
<tr><td>수정 후</td><td>수산 생물(해양 생물)이란 해수 혹은 그 주변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을 지칭한다. 수산 생물에는 유영 능력이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해수 중 표류하는 부유 생물 (플랑크톤, Plankton)과 물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일 수 있는 유영 생물, 수계의 밑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는 저서 생물 등이 있다.
<table>
<tr><td rowspan="7">부유 생물</td><td>극초미소 부유 생물
(Femto plankton)</td><td>· 크기 : 0.02~0.2μm
· 해수 중에 떠돌아다니는 부유생물 중 가장 작은 크기로 바이러스 (virus) 같은 감염성 입자</td></tr>
<tr><td>초미소 부유 생물
(Pico plankton)</td><td>· 크기 : 0.2~2.0μm
· 주로 부유성 세균(박테리아)으로, 일부는 광합성에 참가하지만 대부분은 떠돌아다니는 물질의 분해에 관여함
· 종속영양 박테리아, 광합성 박테리아, 진핵성 편모류, 단세포 조류 등이 속함
· 광합성 박테리아인 남세균이 기초생산자로서 많이 출현</td></tr>
<tr><td>미소 부유 생물
(Nano plankton)</td><td>· 크기 : 2.0~20μm
· 단세포 편모류와 작은 크기의 섬모충류 및 미세조류 등이 출현
· 채집망으로는 채집이 어렵고, 해수를 여과지로 걸러 채집</td></tr>
<tr><td>소형 부유 생물
(Micro plankton)</td><td>· 크기 : 20~200μm
· 보통 크기의 미세조류와 섬모충류 및 요각류 유생 등이 많이 출현
· 채집망으로 채집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식물성 부유 생물과 저서 및 어류의 알, 유생이 속함</td></tr>
<tr><td>중형 부유 생물
(Meso plankton)</td><td>· 크기 : 200~2,000μm(200um~2cm)
· 비교적 크기가 큰 대형 규조류나 요각류, 어류의 알 등</td></tr>
<tr><td>대형 부유 생물
(Macro plankton)</td><td>· 크기 : 2,000~20,000μm(2~20cm)
· 대형요각류, 화살벌레, 어류의 치자어 및 소형 해파리, 크릴새우류 등이 출현</td></tr>
<tr><td>거대 부유 생물
(Mega plankton)</td><td>· 크기 : 20,000μm(20cm) 이상
· 대형 해파리류, 부유 모자반 등이 출현</td></tr>
</table>
</td></tr>
<tr><td>수정사유</td><td>본문 내용 오류</td></tr>
</table>

<table>
<tr><th>위치</th><th>오류유형</th><th colspan="2">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104p
Point 125</td><td>문제-본문</td><td colspan="2">POINT 125 수산업 관리제도 ★
1. 면허어업 ★
•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어업권이 부여된다.
• 면허권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다. 외해양식어업만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대상이다. 1.
• 수산 자원의 증식 · 보호, 군사 훈련 또는 주요 군사 기지의 보위, 국방, 선박의 항행 · 정박 · 계류, 해저 전선 부설, 수산 동물의 위생 관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 면허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어업권은 물권에 해당하며,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어업권은 이전 ·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 ① 정치망어업 ② 해조류양식어업
③ 패류양식어업 ④ 어류등양식어업
⑤ 복합양식어업 ⑥ 마을어업
⑦ 협동양식어업 ⑧ 외해양식어업 2.</td><td>1. 삭제
2. [예] ① 정치망어업 ② 마을어업</td></tr>
<tr><td rowspan="2">105p
Point 126</td><td rowspan="2">문제-본문</td><td>수정 전</td><td colspan="2">POINT 126 담당자(부처)에 따른 분류
<table><tr><td>해양수산부장관</td><td>• 어장이용개발계획지침 수립
• 외해양식어업 면허
•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허가
• 근해어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허가
•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어구의 규모 등 제한
•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 원양어업 허가
• 보호수면 지정
• 총 허용 어획량 관리계획 수립</td></tr><tr><td>시 · 도지사</td><td>•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 등록 대상 수산물 가공업(육상 어유 가공업, 한천 가공업, 선상 수산물 가공업 등)
• 보호수면 관리
•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td></tr><tr><td>시장 · 군수 · 구청장</td><td>•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제외한 어업면허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 구획어업에서 무동력어선, 5톤 미만의 동력어선 허가
• 신고어업에서 어구 · 어선 · 시설 신고 수리
• 신고 대상 수산물 가공업
•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 등록
• 소하성 어류 인공부화 후 방류 신고</td></tr></table></td></tr>
<tr><td>수정 후</td><td colspan="2"><table><tr><td>해양수산부장관</td><td>· 어장이용개발계획지침 수립
·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허가
· 근해어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허가
· 어구의 규모 등 제한
· 원양어업 허가
· 보호수면 지정 및 해제
·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 수립
· 조업수역 조정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
· 어선의 선복량 제한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등</td></tr><tr><td>시·도지사</td><td>·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허가(연안어업)
· 보호수면 지정 및 해제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규정 수립 등</td></tr><tr><td>시장·군수·구청장</td><td>·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 구획어업에서 무동력어선, 5톤 미만의 동력어선 허가
· 신고어업에서 어구·어선·시설 신고 수리
·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 등록 등</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위치</th><th>오류유형</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106p
Point 127</td><td>문제-본문</td><td>
<table>
<tr><td>수정 전</td><td>
POINT 127 「수산자원관리법」상 관리제도
<table>
<tr><td>어구 제한</td><td>• 해조 인망류 어구 사용 제한
• 2중 이상의 자망(걸그물) 사용 제한
• 그물코 크기 제한 등</td></tr>
<tr><td>어장 · 어기 제한</td><td>조업금지구역이나 휴어기 설정같이 어장 · 어기 제한</td></tr>
<tr><td>어선의 사용 제한</td><td>• 허가된 어업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 금지
• 불법 어구를 사용 목적으로 어선의 개조 금지</td></tr>
<tr><td>유해 어법 금지</td><td>• 폭발물 및 전류 사용 금지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시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화약류 사용 시</td></tr>
<tr><td>소하성 어류 보호</td><td>소하성 어류를 인공 부화하여 방류하려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td></tr>
<tr><td>환경친화적 어구 사용</td><td>번식 · 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td></tr>
<tr><td>멸종 위기 동물 보호</td><td>–</td></tr>
<tr><td>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및 방류명령</td><td>•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 금지
• 불법 어획물에 대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방류를 명령 가능</td></tr>
</table>
</td></tr>
<tr><td>수정 후</td><td>
<table>
<tr><td>어구 제한</td><td>· 2중 이상의 자망(걸그물) 사용 제한
· 그물코 크기 제한 등</td></tr>
<tr><td>어장·어기 제한</td><td>· 조업금지구역이나 휴어기 설정같이 어장·어기 제한</td></tr>
<tr><td>어선의 사용 제한</td><td>·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td></tr>
<tr><td>유해 어법 금지</td><td>· 폭발물, 유독물 및 전류 사용 금지
·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td></tr>
<tr><td>소하성 어류 보호</td><td>· 소하성 어류를 인공 부화하여 방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td></tr>
<tr><td>환경친화적 어구 사용</td><td>·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td></tr>
<tr><td>멸종 위기 동물 보호</td><td>-</td></tr>
<tr><td>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및 방류명령</td><td>·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 금지
· 불법 어획물에 대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방류를 명령 가능</td></tr>
</table>
</td></tr>
</table>
</td><td></td></tr>
<tr><td>106p
Point 128</td><td>문제-본문</td><td>
POINT 128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다음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기르는 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td><td>삭제
→ 수산업법 : 2019.8.27. 개정법령(2020.8.28. 시행)에서 삭제됨</td></tr>
</table>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34p 지식 IN	개념,공식-설명	지식 IN 1 어로 원가 2 단위 면적당 매출액	1. 매출 원가 2. 삭제
135p 지식 IN	문제-본문	지식 IN 인력 효율	인력 효율 24,000kg ÷ 1,000명 = 24kg/명
232~232p 4~4줄	문제-본문	76 다음 중 통조림 살균 후 급속냉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열성 세균 발육 억제 ② 황화수소 발생 억제 ③ 조직물 연화 ④ 공기 팽창 효과로 인한 용기 파손 방지 해설 급속냉각은 공기를 팽창시키지 않고 수축시키며, 용기 파손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급속냉각은 열성 세균 발육 억제, 황화수소 발생 억제, 조직물 연화, 스트루바이트 생성 방지를 위한 절차이다.	조직물 연화 > 조직물 연화 방지
		수정 사유	선지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